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25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7.

발 의 자:이종성·박덕흠·성일종

임이자 • 허은아 • 정운천

김태호 · 이종배 · 박성민

이명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 년마다 장애인의 복지, 교육문화, 경제활동,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장애인은 신체적,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재난 등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, 안전 설비 설치나 재난안전 교육 기회 부족 등 안전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제2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2제2항제5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장애인정책종합계획)	제10조의2(장애인정책종합계획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
	<u>사항</u>
<u>5</u> . (생 략)	<u>6</u> .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